|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
| --- |
| 문 화 예 술 회 관 |

#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연월일 | 2026. . . |
| --- | --- |
| 발 의 자 | 전희정 의원 외 1인 |

#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희정 의원 대표 발의)

| 의 안 번 호 | |
|---|---|

발의연월일: 2026. . .
발 의 자: 전희정·김재우 의원(2인)
찬 성 자: 김정미·김종화·김지식·김춘남 김현경·김효석·박윤경·이상호 이정호·이정희·이탕모·임명섭 의원(12인)

## 1. 제안이유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사용허가 및 취소 과정의 공정성·객관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주요 대관사항을 외부 전문가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사용허가 취소 등 불이익 처분 시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와 사유 제시를 명확히 하여 예술회관 운영의 효율성과 시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사용허가(안 제3조)

나. 사용허가의 제한(안 제4조)

다. 대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4조의2)

라. 위원회의 구성(안 제4조의3)

마. 위원장의 직무(안 제4조의4)

바. 회의(안 제4조의5)

사. 위원회의 운영 등(안 제4조의6)

아. 사용허가의 취소·철회 등(안 제9조)

**3.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30조

2) 「행정기본법」 제17조 ~ 제19조

3) 「행정절차법」 제21조 ~ 제24조

나. 부서검토: 문화예술회관(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라.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조례 제 호

#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대관”이란 구미시장이 공연・전시・행사 등을 위하여 예술회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전시・행사

③ 정기대관의 사용허가 및 동일한 기간에 둘 이상의 대관신청이 경합하는 경우는 제4조의2에 따른 구미시문화예술회관 대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기대관 및 대관신청 경합 시의 세부 심의기준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시장은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 중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을 “그 밖에”로 한다.

4.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공연・전시 또는 행사의 개최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6. 대관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제9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 또는 제6호의 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철회된 사실이 있는 경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대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예술회관 및 강동문화복지회관 대관의 공정성・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미시문화예술회관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기대관의 사용허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2. 동일한 기간에 둘 이상의 대관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

3. 이미 허가된 대관의 취소・철회 또는 허가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대관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4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예술회관장과 문화예술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

장이 위촉한다.

1.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공연・전시의 기획・제작 또는 공연장 운영・대관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법률 또는 행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공연장 시설・소방・재난 등 안전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예술회관 대관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은 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의5(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최초 회의는 시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출석한 위촉직 위원 중 연장자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4조의2제2항제3호의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없다.

제4조의6(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술회관 대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의 제목 “(허가취소)”를 “(사용허가의 취소·철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사용허가 후 다음”으로,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을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허가를 취소·철회하거나 허가조건을 변경”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조”를 “제4조제1항”으로, “발생한 때”를 “사용허가 후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아니하였을 때”를 “아니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이 조례, 이 조례 시행규칙 또는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6. 사용 과정에서 중대한 질서문란 등으로 이용자의 생명·신체 또는

시설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7. 천재지변, 재난, 중대한 시설 고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이용자의 생명·신체 또는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의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에 앞서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용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고, 청문 또는 의견제출 등 필요한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제4조의2에 따른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가 제출한 의견과 의견청취 결과를 심의자료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⑤ 시장은 사용허가를 취소·철회하거나 허가조건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근거, 구체적인 사유 및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다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⑥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있어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절차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을 임시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사유를 사용자에게 지체 없

이 알리고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체 없이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절차를 진행하여 사용정지의 계속·해제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철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되어 처리 중인 사용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이미 허가된 대관을 취소·철회 또는 허가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의2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br>1. ~ 5. (생 략)<br><신 설> | 제2조(정의) ----------.<br>1. ~ 5. (현행과 같음)<br>6. “대관”이란 구미시장이 공연·전시·행사 등을 위하여 예술회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
| 제3조(사용허가) ① (생 략)<br>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의 경우에는 예술회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br>1.·2. (생 략)<br>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성 공연, 전시 및 행사<br>③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신 설> | 제3조(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br>② ----------.<br>1.·2. (현행과 같음)<br>3.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전시·행사<br>③ 정기대관의 사용허가 및 동일한 기간에 둘 이상의 대관신청이 경합하는 경우는 제4조의2에 따른 구미시문화예술회관 대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br>④ 제3항에 따른 정기대관 및 대관신청 경합 시의 세부 심의 |

| | |
|---|---|
| | 기준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
| 제4조(사용허가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4.기타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 4.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공연·전시 또는 행사의 개최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 <신 설> |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
| <신 설> | 6. 대관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제9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 또는 제6호의 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철회된 사실이 있는 경우 |
| ②제3조에 의한 사용허가는 공연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되 1일 횟수는 오전, 오후, 야간 각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 8.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4일 이내 | 8. 그 밖에 ---------- |

| | |
|---|---|
| <신 설> | 제4조의2(대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예술회관 및 강동문화복지회관 대관의 공정성·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미시문화예술회관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br>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br>1. 정기대관의 사용허가 및 제한에 관한 사항<br>2. 동일한 기간에 둘 이상의 대관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br>3. 이미 허가된 대관의 취소·철회 또는 허가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br>4. 그 밖에 시장이 대관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
| <신 설> | 제4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br>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

| | |
|---|---|
| |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br>③ 당연직 위원은 예술회관장과 문화예술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br>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br>1.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br>2. 공연·전시의 기획·제작 또는 공연장 운영·대관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br>3. 법률 또는 행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br>4. 공연장 시설·소방·재난 등 안전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br>5. 그 밖에 예술회관 대관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br>⑤ 위촉직 위원은 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 | |
|---|---|
| |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 <신 설> | 제4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br>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신 설> | 제4조의5(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br>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최초 회의는 시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출석한 위촉직 위원 중 연장자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br>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br>④ 제4조의2제2항제3호의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없다. |
| <신 설> | 제4조의6(위원회의 운영 등) ① |

| | |
|---|---|
|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술회관 대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br>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 제9조(허가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철회 등) ①---------- 사용허가 후 다음 ------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허가를 취소·철회하거나 허가조건을 변경---. |
|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 시행규칙이나 명령에 위반한 때 | 1. 이 조례, 이 조례 시행규칙 또는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
| 2.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 | 2. 제4조제1항 ---------- 사용허가 후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
| 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권을 타인에게 무단양도한 때 | 3. ---------- 경우 |
| 4. 사용료를 소정의 기일내에 | 4. ---------- |

| | |
|---|---|
|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 ------ 아니한 경우 |
| 5. 질서가 지극히 문란하다고 인정할 때 |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 6.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6. 사용 과정에서 중대한 질서 문란 등으로 이용자의 생명·신체 또는 시설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
| <신 설> | 7. 천재지변, 재난, 중대한 시설 고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이용자의 생명·신체 또는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의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
| <신 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에 앞서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용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고, 청문 또는 의견제출 등 필요한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
| <신 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제4조의2에 따른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가 제출한 의견과 의견청취 결과를 심의자료에 포함하여야 한다. |
| <신 설> |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 |

| | |
|---|---|
| |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
| <신 설> | ⑤ 시장은 사용허가를 취소·철회하거나 허가조건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근거, 구체적인 사유 및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다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
| <신 설> | ⑥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있어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절차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을 임시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사유를 사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체 없이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절차를 진행하여 사용정지의 계속·해제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철회 여부 |

| | |
|---|---|
| | 를 결정하여야 한다. |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

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행정기본법」

**제17조(부관)** ①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붙일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1.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2.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사정이 변경되어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부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2.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3.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일 것

**제18조(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①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衡量)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2.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제19조(적법한 처분의 철회)** ①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1.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법령등의 변경이나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3.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개정 2019. 12. 10.>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3.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3조(처분의 이유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4조(처분의 방식)**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1.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③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적어야 한다.

# 검 토 의 견 서

부서명: 문화예술회관

| 조 례 명 |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검토 사항

○ 근거 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 「행정기본법」 제17조(부관), 제18조(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제19조(적법한 처분의 철회)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22조(의견청취), 제23조(처분의 이유제시), 제24조(처분의 방식)

## □ 주요 사항

○ 대관 사용허가의 제한 기준 구체화(안 제4조)

○ 구미시문화예술회관 대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구성·운영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 제4조의6)

○ 사용허가 취소·철회 시 사전통지, 청문 등 행정절차 준수 및 서면 통지 의무화(안 제9조)

## □ 검토 결과

○(대관 공정성 확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관심의위원회를 통해 대관 심의 과정의 객관성·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됨

○(행정 절차적 정당성 강화) 사용허가 취소 및 철회 등 불이익 처분시 사전통지 및 청문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이용자 권익 보호 및 신뢰행정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

○ 기대효과: 대관 행정의 투명성 제고, 특혜 및 민원 분쟁 예방, 문화예술회관 운영 신뢰도 향상

○ 소요예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문 제 점: 해당사항 없음

#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4조의5: 대관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회의 참석 수당 지급

##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

##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조례안은 대관심의위원회 설치 및 행정절차 정비를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소요는 위원회 참석 수당(연간 약 200만 원 내외) 등 경미한 수준에 해당하여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재정소요액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 4. 작성자

○ 문화예술회관 공연기획팀 김진생(☎054-480-4577)